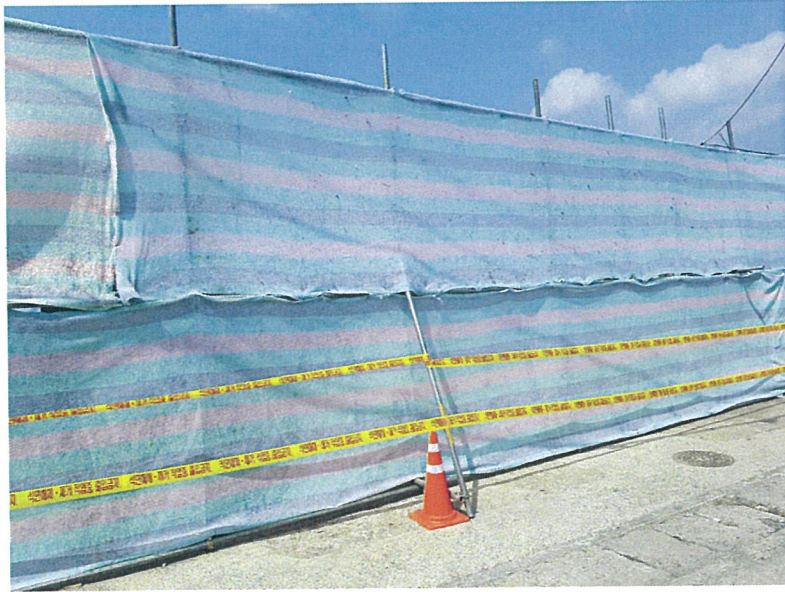


비산농도 측정 결과서



현장명 : 북평소2-19호(119지역내) 군계획시설 지정폐기물 철거공사

2018.04.10.~2018.04.12.

주 식 회 사 민 영



- 순 서 -

1. 개요

2. 석면 농도 측정 결과표 및 위치도(작업 중)

3. 조사 대상 현장 사진

붙임. 석면조사기관 지정서
 석면 조사자 자격사항

1. 개 요

1.1 과업명

석면 해체·제거작업 중 공기 석면농도 측정

1.2 석면측정 및 분석방법

환경부고시 제2012-79호(석면조사 및 안정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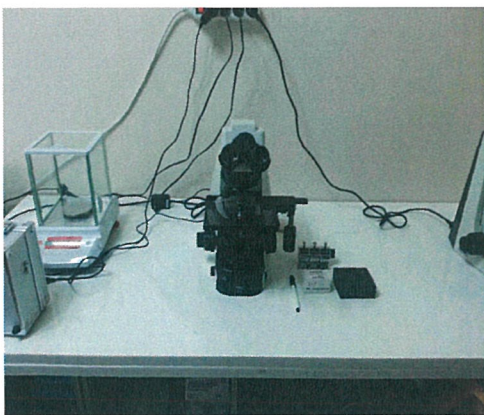
1.3 시료채취

- 가) 시료채취 직전 시료채취기와 펌프를 유연성튜브로 연결한다.
- 나) 3단 카세트의 상단부 뚜껑을 열어(open face) 시료를 채취하며, 카세트의 열린 면이 바닥 쪽을 향하도록 한다.
- 다) 적정유량(0.5~16 L/분)으로 유량보정 후 400L이상 채기 한다. (유량보정은 채취 전·후 실시)
- 라) 현장 공시료를 준비한다.

1.4 시료분석

공기 중 석면농도 분석은 필터 투명화를 위해 아세톤 증기화 장치를 이용하여 전처리를 실시한 후, 위상차 현미경 (BX51T, Olympus, Japan)을 이용하여 노동부 고시 제 2012-09호에 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.

(주)민영의 석면분석실험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정도관리 참여하여 석면분석능력을 인증 받은기관이다.



공기중 시료 분석용 위상차현미경

석면농도측정 결과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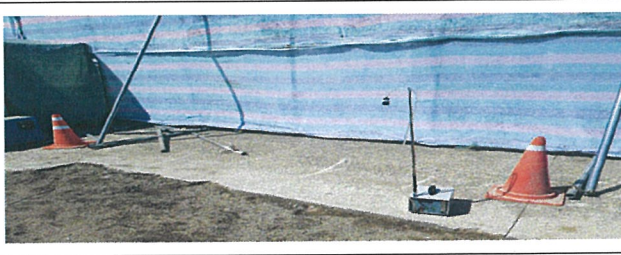
별 첨

측정결과

2018년 04월 10일

시료번호	측정지점	측정 결과(f/cc)	검출석면
부지 - 01	지점 1. 부지 경계선	0.004	미만
부지 - 02	지점 2. 부지 경계선	0.005	미만
부지 - 03	지점 3. 부지 경계선	0.003	미만
부지 - 04	지점 4. 부지 경계선	0.005	미만
위생 - 01	지점 5. 위생시설	0.003	미만
반출 - 01	지점 6. 반 출 구	0.004	미만

3.현장사진(2018.04.10.)

1. 부지-1(부지경계)	2. 부지-2(부지경계)
	
3. 부지-3(부지경계)	4. 부지-4(부지경계)
	
5. 위생-5(위생설비)	6. 반출-01(주변지역)
	

석면농도측정 결과표

별 첨

측정결과

2018년 04월 11일

시료번호	측정지점	측정 결과(f/cc)	검출석면
부지 - 01	지점 1. 부지 경계선	0.003	미만
부지 - 02	지점 2. 부지 경계선	0.005	미만
부지 - 03	지점 3. 부지 경계선	0.005	미만
부지 - 04	지점 4. 부지 경계선	0.003	미만
위생 - 01	지점 5. 위생시설	0.004	미만
반출 - 01	지점 6. 주 변 지 역	0.004	미만

3.현장사진(2018.04.11.)

1. 부지-1(부지경계)	2. 부지-2(부지경계)
	
3. 부지-3(부지경계)	4. 부지-4(부지경계)
	
5. 위생-5(위생설비)	6. 반출-01(주변지역)
	

석면농도측정 결과표

별 첨

측정결과

2018년 04월 12일

시료번호	측정지점	측정 결과(f/cc)	검출석면
부지 - 01	지점 1. 부지 경계선	0.005	미만
부지 - 02	지점 2. 부지 경계선	0.005	미만
부지 - 03	지점 3. 부지 경계선	0.004	미만
부지 - 04	지점 4. 부지 경계선	0.004	미만
위생 - 01	지점 5. 위생시설	0.003	미만
반출 - 01	지점 6. 주 변 지 역	0.005	미만

3.현장사진(2018.04.12.)

1. 부지-1(부지경계)	2. 부지-2(부지경계)
	
3. 부지-3(부지경계)	4. 부지-4(부지경계)
	
5. 위생-5(위생설비)	6. 반출-01(주변지역)
	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변경)

기관명 주식회사 민영

소재지 (235-800)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980 (황지동 71-19)

대표자성명 김진필

총 대행(지정)
한 계 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
지정사항 관 할 지 역
대행(지정) 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한계

대행(지정)
지역 전국
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2. 석면조사기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5. 7. 14

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장





제 K.S13-83-0007 호

수 료 증

소 속 : (주)민영

성 명 : 김 진 필

생년월일 : 1979년 3월 12일생

위 사람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 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0조의3 관련 [별표10의3] (신설 '09.2.6공포, '09.8.7시행)에 따라 석면 조사자 과정 (석면 조사기관)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

- 석면 조사자과정 - 이론 10시간, 실습 8시간 이상.
- 교육기간 - 2013. 7. 16 ~ 2013. 7. 18
- 재발급 사유 - 소속 업체명 변경.

2014 년 12 월 12 일

고용노동부 위탁교육전문기관
사단
법인 한국석면환경협회 이사장



측정지점위치도

